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64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윤준병·장철민·박홍배

신영대 · 황명선 · 박민규

강준현 · 정동영 · 박희승

허 영·문대림·이춘석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 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국정 운영의 중대한 지장으로 국가의 불안과 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대통령 권한대행 등) ①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궐위(闕位) 또는 사고 (事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자"라 한다)한다.
 - 1.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 2.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나 내란 또는 외환의죄에 의한 체포·구금 또는 수감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보좌한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권한 행사 중지 요구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도달되는 즉시 그 효력은 상실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대통령 권한대행 등)
	①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궐위(闕
	位) 또는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
	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
	서로 그 권한을 대행(이하 "대
	통령 권한대행자"라 한다)한다.
	1.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
	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
	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
	<u>는 상태</u>
	2.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
	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의한 체포・구금

 또는 수감으로 권한 행사가 정

 지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

 지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에 따른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보좌한다.

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권한 행사 중지 요구안이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도달되는 즉시 그 효력은 상실된다.